

울산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5년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2차 공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울산 콘텐츠 기업의 현지 진출 발판 마련 또는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2차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6. 17.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개요

□ 사업목적

- 울산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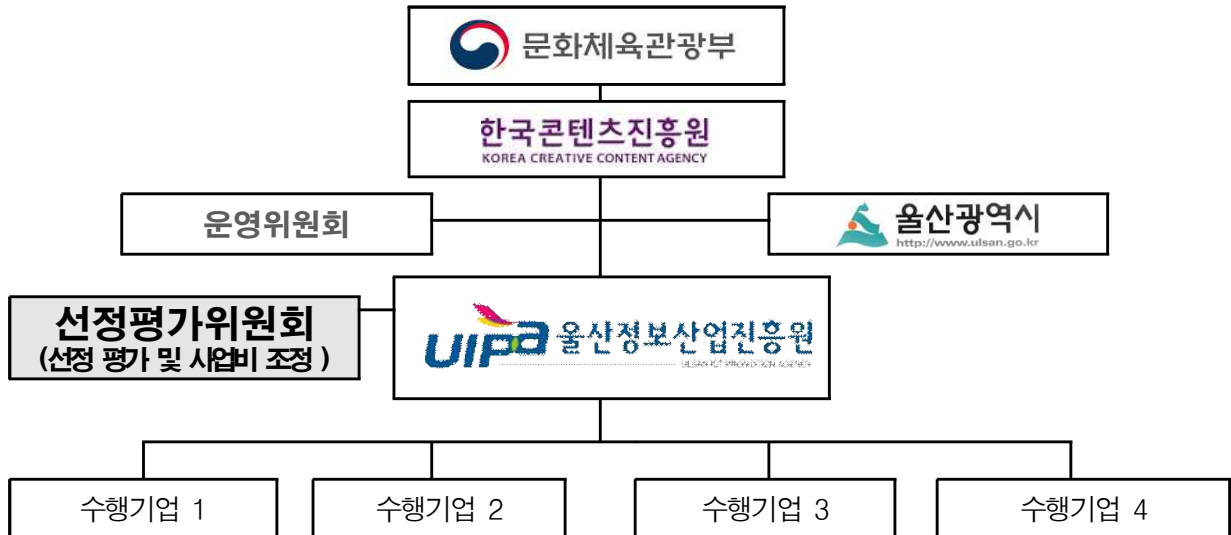
□ 공모개요

- 공모명 : 2025년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 지원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gosims.or.kr)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 30.
- 지원규모 : 총 1건 / 총 10백만원(시비)
- 공고기간 : '25. 6. 17.(화) ~ 7. 1.(화)
- 신청기간 : '25. 6. 17.(화) ~ 7. 1.(화), 16:00까지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10%) 이상 별도 편성 필수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1개사)

2 세부내용

□ 추진체계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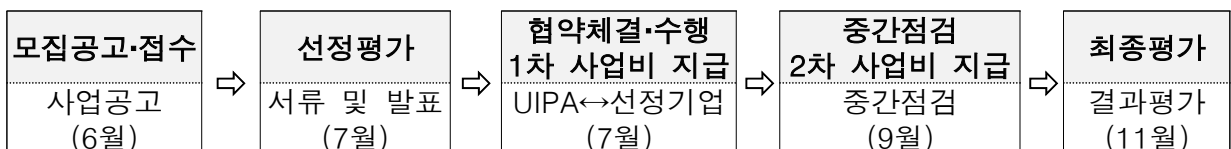
○ 추진체계



○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울산정보산업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 및 과제 적합성 검토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수행기관과 공동) ◦ 착수, 중간점검 및 평가, 예산집행 등 수행과제 과제관리 일체 ◦ 수행기업 지원(e나라도움 사용, 사업비 집행 안내 등)
선정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평가 및 선정과제 사업비 조정 ◦ 그 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
수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신청 총괄 및 협약체결(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동) ◦ 해당 과제의 개발 등 추진 ◦ 해당 과제 실적 자료 작성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업무

○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내용

- 지원규모 : 총 1건 / 총 1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 30. ※ 사업 완료 : '25. 11. 30.
- 유의사항
 - (해외전시회 참가) : 마켓(행사) 참가 이후 ①결과보고서, ②참가 마켓(행사)의 리포트 제출 필수
 - ※ 마켓 규모, 주요 참가사, 주요 바이어 DB, 마켓 특징 등 포함
- 지원규모 : 해외 마켓 참가 및 부대비용 지원 등

유형	지원 대상	총 지원금액 (기업수)
해외전시회 참가	구체적인 시장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업(해외 참가 전시회)	10,000천원 내외 (1개사 내외)

※ 과제 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성 있으며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함

○ 지원내용

※ 아래 지원내용 항목에 없더라도, 상당한 마케팅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별도 제시 가능

구분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임차비 ○ 현지 PoC, 제품 시연을 위한 국제운송비 및 운송보험료 ○ 리플릿, 브로슈어 등 콘텐츠 홍보물 제작 ○ 마케팅 활동을 위한 출장비용(항공료*, 숙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국적기 직항노선(왕복) 이코노미 일반석 실비 기준, 1인 이내 [숙박]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구분5, 가 등급 기준 이내 지원 가능, 1인 이내 * 출장비용 중 일비, 식비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지원 불가)

※ 동일한 지원사항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 기관의 해외마켓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상기 지원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 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 (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 콘텐츠 기업 : 게임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개발하는 기업)
- ※ 사업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울산
- ※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정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
- ※ 공고기간 내 울산 이전 완료 가능한 기업 또는 협약일 이후 1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기업(협약일 이후 이전 시 이전 확인서 접수서류 필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신청 및 제한기준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대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에는 본사로 지원해야 함,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과제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제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년도 포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이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함 ※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불가

○ 필수요건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 참여인력 1인 이상
 - ※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 포함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수료(온/오프라인 택일)
-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이수 : 참여인력 전원
 - ※ 인정범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 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개발기간 : 협약종료일
- IP 등록 : 지원과제 최종산출물에 대한 IP 등록(접수) 목표
- 소재지 유지 : 사업수행 중 주관기업의 본사 및 관외기업의 지사를 관외 이전 시, 사업취지 위배에 따라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하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고지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 지원성과 사후관리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4년 간 관리기관 (상위기관)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 자료 의무 제출
 - ※ 제출자료(예시) : 신규채용인력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매출증빙(25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 편성 : 민간자부담(10%) 이상 현금 별도 편성 필수

- ※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필수
- ※ 자부담금 미집행 시 미집행 비율에 따라 지원금 환수
- ※ 자부담금의 경우 현물 불인정

[사업비 관련 용어설명]

- 지원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민간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기부담금
- 대기업은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제출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A + B, 100%)	지원금 (A, 90%)	민간 부담금(현금) (B = A ÷ 9, 10%)	비고
11,120천원	10,000천원	1,120천원	

○ **사업비 집행**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 불가
-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본 사업의 예산에는 미편성
 -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불가일 경우, 신용등급확인서로 갈음하며, B등급 이상 시 인정
- 주관 및 참여기관 간, 주관 및 참여기업 간 위탁거래 불가
- 향후 사업수행 시 지원금은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 관리 및 상기계좌와 연동된 e나라도움 전용 사업비 카드 발급 사용
- 민간자부담 사업비 계좌 입금 확인후 지원금 지급
- 예산집행 시 모든 금액 부가세 미인정(공급가액 인정)
 - ※ 이외 세부사항 사업신청 및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준비 : e나라도움(www.gosims.or.kr) 회원가입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공고기간 : '25. 6. 17.(화) ~ 7. 1.(화)

○ 신청기간 : '25. 6. 17.(화) ~ 7. 1.(화), 16: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 양식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uipa.or.kr>) → 사업공고
 → 콘텐츠 육성 지원 → 해당 공고 확인 후 다운로드

□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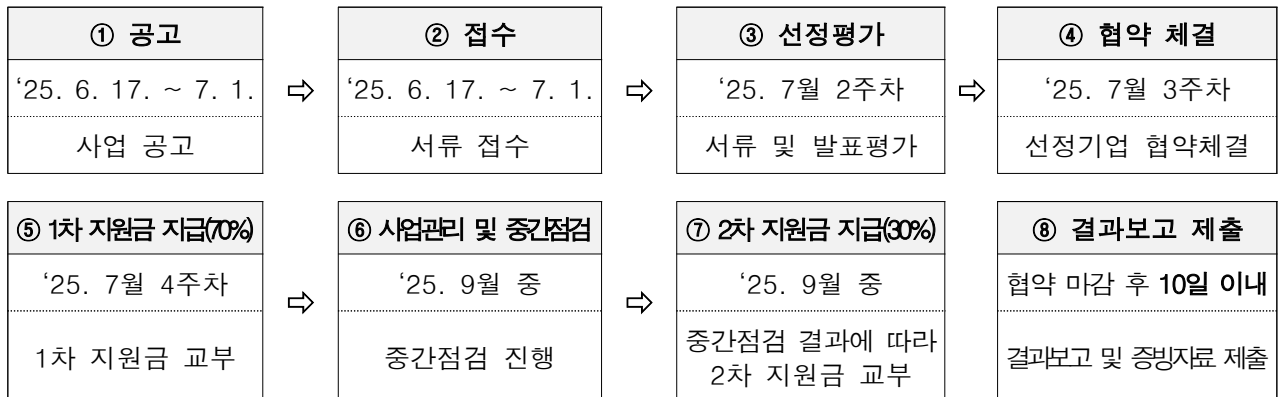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지원한도
해외전시회 참가	- 사업신청서 - 청렴이행각서 - 중복 지원 금지 약약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 - 사업자부담금 약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납입증명 - 재무제표(최근 3년)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선정 후) - 신용등급 확인서(선정 후) - 이전 약약서(해당 시)	1개사/10,000천원 (VAT 별도, 자부담 10% 이상)

-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포함)
- e나라도움 공모신청
 - ① **[과제조회]** e나라도움 메인페이지 상단 [공모신청] 클릭 → 공모현황 내 공모명 창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검색 → 해당 사업 공모 확인
 - ② **[신청서 작성]** 공모명 클릭 후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공모목록 우측) → 신청기관 정보등록 작성 후 [다음] 버튼 클릭하여 순차적 입력
 - ※ [사업기본정보][수행기관정보] [자원조달계획][자격요건확인][파일첨부]
 - ③ **[신청서 제출]** 모든탭 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 [신청서제출] → [접수완료]
 - ※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사업신청목록상 **진행상태가 [제출]상태 최종 확인**
 - ※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e나라도움 고객센터 이용(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 지원사업 공모 현황 파악을 위한 접수 전 사업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양식목록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보완이 불가하며, 누락파일 추가 접수 불가
 - ※ **압출파일명 : [공모분야] 기업명_과제명(짧게).zip**
 - ① 통합버전 : 1~11번 제출서류 파일 통합 및 직인날인 PDF 필첨(사업신청서 참조)
 - ② 개별버전 : 1~11번 각 제출서류 별 개별폴더 지정·구분 저장(사업신청서 참조)
 - ③ **발표자료 : 10분 내외(PPT 또는 PDF)**
 - ※ PPT 제출 시 별도 글꼴 적용 불가(글꼴 삽입되어야함)
 - ※ 용량 초과 시, 별도 메일 전송이 가능하나, 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전송이 완료되어야 함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 및 추진절차



※ 추진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평가 및 가산점

○ 평가방법

번호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1	적합성검토	UI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 여부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서류 여부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서류 여부 지원자격 기준 및 가산점 부합 여부 																		
2	과제선정 발표평가	선정평가 위원회 (7인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사 기업역량(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 및 수출규모, 제작 현황, 해외진출 현황 수행기업 및 지원금액 등의 적정성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제(70점/100점 이상 시 지원) 발표자료(PPT), 자유양식, 사전 준비 필요, 접수기간 종료 직후 제출 예정 [해외전시회 참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평가항목</th> <th>평가내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해외진출 역량(20)</td> <td> - 매출 및 수출 규모, 주요인력 등의 전반적인 기업현황 - 주요 계약 성과(해외진출 이력), 해외 홍보마케팅 역량 - 해외전시회 참가 경험 및 참가를 통한 수출실적 이력 </td> <td>20</td> </tr> <tr> <td>경쟁력 (25)</td> <td> - 참가 콘텐츠의 해외진출 경쟁력 및 수출 가능성 - 신청 콘텐츠의 국내외 성과, 특징, 수상경력 등 - 향후 해외 시장 진출 및 매출 성장 가능성(수출계약, 판매 등) </td> <td>25</td> </tr> <tr> <td>시장성 (20)</td> <td> -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의 적정성 - 목표시장 설정 및 타겟 분석의 현실성 </td> <td>20</td> </tr> <tr> <td>참가계획 (25)</td> <td> - 해외마켓 참가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 제출 자료 내용의 충실도 및 명확성 - 수출상대국(전시회 참여국) 선정사유 - 현장 및 사후 비즈니스 활동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비즈니스 미팅/사후 활동 계획 - 기존 컨택 바이어 리스트 및 비즈니스 진행현황 등 </td> <td>25</td> </tr> <tr> <td>예산타당성 (10)</td> <td> - 사업비 규모 및 집행계획 타당성 </td> <td>10</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해외진출 역량(20)	- 매출 및 수출 규모, 주요인력 등의 전반적인 기업현황 - 주요 계약 성과(해외진출 이력), 해외 홍보마케팅 역량 - 해외전시회 참가 경험 및 참가를 통한 수출실적 이력	20	경쟁력 (25)	- 참가 콘텐츠의 해외진출 경쟁력 및 수출 가능성 - 신청 콘텐츠의 국내외 성과, 특징, 수상경력 등 - 향후 해외 시장 진출 및 매출 성장 가능성(수출계약, 판매 등)	25	시장성 (20)	-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의 적정성 - 목표시장 설정 및 타겟 분석의 현실성	20	참가계획 (25)	- 해외마켓 참가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 제출 자료 내용의 충실도 및 명확성 - 수출상대국(전시회 참여국) 선정사유 - 현장 및 사후 비즈니스 활동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비즈니스 미팅/사후 활동 계획 - 기존 컨택 바이어 리스트 및 비즈니스 진행현황 등	25	예산타당성 (10)	- 사업비 규모 및 집행계획 타당성	1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해외진출 역량(20)	- 매출 및 수출 규모, 주요인력 등의 전반적인 기업현황 - 주요 계약 성과(해외진출 이력), 해외 홍보마케팅 역량 - 해외전시회 참가 경험 및 참가를 통한 수출실적 이력		20																		
경쟁력 (25)	- 참가 콘텐츠의 해외진출 경쟁력 및 수출 가능성 - 신청 콘텐츠의 국내외 성과, 특징, 수상경력 등 - 향후 해외 시장 진출 및 매출 성장 가능성(수출계약, 판매 등)		25																		
시장성 (20)	-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의 적정성 - 목표시장 설정 및 타겟 분석의 현실성		20																		
참가계획 (25)	- 해외마켓 참가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 제출 자료 내용의 충실도 및 명확성 - 수출상대국(전시회 참여국) 선정사유 - 현장 및 사후 비즈니스 활동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비즈니스 미팅/사후 활동 계획 - 기존 컨택 바이어 리스트 및 비즈니스 진행현황 등	25																			
예산타당성 (10)	- 사업비 규모 및 집행계획 타당성	10																			
3	종합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심의를 통해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등 최종선정 ※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 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4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결과물의 적정성, 수행관리 충실성, 추진경과 등 발표자료(PPT), 자유양식, 사전 준비 필요 자료 요청/제출 : 평가일 14일전 / 5일전 70점 이상 시 2차 지원금 교부(30%) 																			
5	최종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결과물의 적정성, 수행관리 충실성, 사업화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발표자료(PPT), 자유양식, 사전 준비 필요 자료 요청/제출 : 평가일 14일전 / 5일전 60점 이하 환수 대상 평가 실시 																			

○ 가산점 부여(중복가능, 증빙서류 제출 必)

- 선정평가 시 가산점은 최대 2점 부여 가능

구분	소재지	사업화	비고
내용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특허등록*	
가점	1점/건	1점/건	

* 특허 출허단계(미등록) 가산점 해당없음

※ 가산점은 각 구분별 최대 점수를 넘길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범위 : 해외전시회 참가비 및 마케팅 비용 등

- 사업자부담금(지원금, 자부담금)은 공고에 제시된 표를 준수하여 부담해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
- 총 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
- 세부 사업비 및 과제의 수는 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이외 사업비 편성관련 준수사항은 사업공고내용 및 사업안내문 참고

○ 지급방법 : 최종선정과제에 한하여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70%)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결과 이상없을 시
2차 지원금 지급(30%)

※ 중간점검 결과 기준 결과 불합격 또는 이상발생 시 결과보완 및 필요시 재점검을 실시함

구분	중간점검 점수	2차 지원금 지급	비고
합격	70점 이상	2차 지원금(3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불합격	70점 미만	보완계획 수립 및 제출 후 2차 지원금(3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또는 중단

4 기타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기본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지침(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1차 지원금 지급 전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판명 시 협약해약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행정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 확인 시,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 불가 ※ 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
- 선정결과는 e나라도움 시스템 선정결과 및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지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음(기지급 지원금 전액 반납)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 누락 또는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해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을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과제는 우리원 사업 및 과제 홍보 등을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 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최종선정 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과거 3년 내 우리원의 지원사업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 인감을 날인해야하는 경우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선정업체는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중간점검 실시 전까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 취소, 계약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 상담 필요 시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누리집(<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10조('21.1.6.)]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 의무교육, 민간보조 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불인정
 - 사업 선정·수행 등과 관련된 평가의 발표는 과제책임자 이상이 진행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없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및 제출서류**

- 사업문의 : 콘텐츠진흥단 (052-243-7265/hslee@uipa.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참조 ※ 양식준용

2025. 6. 17.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붙임] 여비 지급 구분표(공무원 여비 규정 제 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분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붙임] 국외 여비 지급표(공무원 여비 규정 제 16조 제 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삭제 <2021. 5. 25.>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 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